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30조의10)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모 기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원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을 제30조의11로 하고,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법 제35조의7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0조의10</u> (생략)	<u>제30조의10</u>(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u>제30조의11</u> (현행 제30조의10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연락처	(042) 481 - 4465